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	배포 일시	2023. 3. 24.(금)	
담당 부서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김명훈 (02-2110-4065)
	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나영 (044-201-1791)
		담당자	사무관	이교남 (044-201-1796)
	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책임자	과 장	정준호 (044-200-546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은 (044-200-5471)

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·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

-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“농·어업인안전보험” 가입 허용 -

-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보험)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.27.(월)부터 시행합니다.
-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·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,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·어업인안전보험(산재형에 한함)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.
- 농·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, 일반 산재보험료(농가: 월 약 5만 원 / 어가: 월 약 6만 원) 대비 50%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, 국고·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【 농·어업인 안전보험 개요 】

구분	농업인 안전보험	어업인 안전보험
보장 내용	유족급여금, 장례비, 장해급여금, 상해·질병치료급여금, 입원(휴업)급여금, 재활급여금, 특정질병수술급여금, 특정 감염병진단급여금 등	유족급여금, 장례비, 장해급여금, 상해·질병치료급여금, 입원(휴업)급여금, 재활급여금, 행방불명급여금 등
보험 기간	1년 만기(일시납)	1년 만기(일시납)
보험료(산재형)	193,100원 / 연간	(산재1형) 268,800원 / 연간 (산재2형) 336,300원 / 연간
보험료 지원	국고 50% 지원, 지방비 추가 지원 *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	국고 50% 지원, 지방비 추가 지원 * 지자체별 지원비율(0~50%) 다름
운영 보험사	NH농협생명	수협중앙회
운영 기관	농림축산식품부	해양수산부

□ 이와 함께, 법무부는 지역 농협·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○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·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.

※ 단,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(대포통장·금융사기 방지) 해당 시에는 발급 제한

□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·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김명훈 (02-2110-4065)
<공동>	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나영 (044-201-1791)
		담당자	사무관	이교남 (044-201-1796)
<공동>	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책임자	과 장	정준호 (044-200-546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혜은 (044-200-5471)

□ **산재보험 대신 “농·어업인 안전보험” 가입 허용**

- (애로사항) 근로자 5인 미만 농·어가도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나 영세 고용주 산재보험료 부담 가중
 - ※ 「산재보험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농·어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비법인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
- (개선사항) 산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, 국고·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“농·어업인안전보험*” 가입 시 산재보험 가입 인정
 - *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책 보험으로서 지역농협 및 지구별수협에서 가입 가능, 국고·지방비로 고용주 납부 보험료 지원
 - ※ 농업인안전보험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보험료 지원(보험 가입 시점에 미등록되어있더라도 등록 후 사후 지원 신청 가능, 단 보험 가입 시와 동일 연도내에 한함)
- (기대효과) 일반 산재보험료 (농가: 월 약 5만 원/어가: 월 약 6만 원) 대비 50% 이상 저렴한 보험료, 지역 농협 및 지구별 수협을 통한 쉬운 가입절차로 농어업인의 재정적 부담 및 지자체 행정부담 경감

□ **계절근로자 계좌 개설 지원**

- (애로사항) 일반 금융기관이 체류기간이 짧은 계절근로자를 대상 통장 개설·체크카드 발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가 생활에 불편을 겪고, 고용주 임금 지급에도 애로
- (개선사항) 지역 농협, 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도, 여권 및 계절근로(E-8)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시 계절근로자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가 발급*될 수 있도록 지원
 - * 단, 금융기관 발급 제한사유(대표통장·자금세탁·금융사기 방지) 해당 시 발급 제한
- (기대효과) 계절근로자 명의 계좌 이용으로 생활 편의가 증진되며, 고용주는 간편하게 임금 지급 가능